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규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23
------	------

발의일자 : 2025. 5. 29.

발 의 자 : 장규권 의원

찬 성 자 : 고영찬, 김용술,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 경사로 규정 미비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함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사로 설치 지원, 종류 및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사로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경사로 설치 및 정산, 비용의 반환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장애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5. 5. 30. ~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건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경사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동의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시 설 주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연락처)			
경사로 설치 시설	시설주소			
	건물용도		경사로 종류	☐ 이동식 ☐ 고정식
	설치위치	※ 현장사진 첨부		
	설치예정일		설치방법	☐ 구청 직접 설치 ☐ 신청인 설치
유의사항	시설주(건물·토지 소유주)가 위 사업으로 사업장에 경사로가 설치됨을 동의함.			☐ 동의 ☐ 비동의
	경사로 설치 지원 후 일체 관리 및 민원 사항 등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 있음.			☐ 동의 ☐ 비동의
지 원 금 신청내역	신 청 금 액	금 원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은 행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설치 견적서 및 설계도 각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 · 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